

ESG 평가대응을 위한 영역별 가이드

한택환
환경통계정보연구소 대표/서경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 1. ESG와 ESG 평가
-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 3. ESG 평가의 다양성
- 4. ESG 평가의 표준화
- 5. ESG 평가와 ESG 경영
- 6. ESG 평가 영역별 가이드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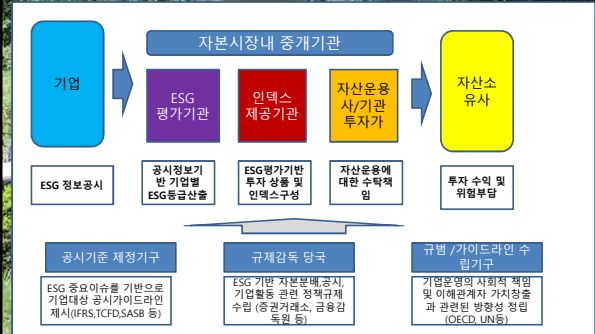
1. ESG와 ESG 평가

ESG와 ESG 평가

- ESG는 **재무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그 **데이터는 비재무적인** 것이다.
- 비재무적인 요소들 중에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E, S, G이다.
- E, S, G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의무화한 것이 공시제도이다. 공시제도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법률/제도적인 최소한의 의무이다.
- 객관적인 데이터는 공시된 데이터 아닌 다른 자료원천으로부터도 획득할 수 있다.
- E, S, G에 관한 데이터(공시자료 포함)를 바탕으로 각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은 투자의 사결정 등을 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주는 과정이 ESG 평가이다.

1. ESG와 ESG 평가

ESG 평가의 자본시장내 위상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한국에 담았다, 2022.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ESG 평가의 의의

- ESG는 회계제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기업성과나 미래가치의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재무적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ESG 지표들임.
- 분석회계등을 막기 위하여 회계원칙이 존재하듯이 ESG 공시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 재무적 회계자료는 데이터이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재무분석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그와 마찬가지로 ESG데이터(공시자료 + 비공시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이 ESG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CAPM과 α

- CAPM(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하면 기업의 기대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r_i) - r_f = \beta_i (E(r_m) - r_f) + \alpha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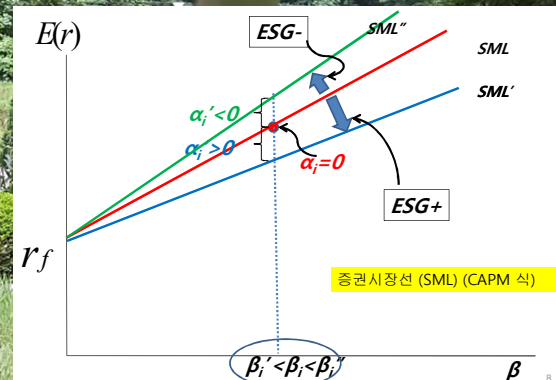
- 여기서 CAPM의 균형상태에서 $\alpha=0$ 이어야 한다.
- β 는 재무적 데이터로 측정된 분산불가능한 위험이며 $E(r)$ 은 체계적 위험을 보상해주는 균형 기대 수익율이다.
- α 는 CAPM모형으로 설명되는 균형기대수익율을 초과하는 기대수익율, 즉 초과수익율이다.
- ESG 성적이 좋은 기업은 이 α 값이 양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적이 나쁜 기업은 α 값이 음수가 될 것이다.
- 이 양의 α 는 초과수익율로 해석할 수도 있고 ESG 성과가 좋은(혹은 나쁜) 기업은 체계적 위험(β)이 적어져서(혹은 커져서) 결과적으로 α 를 양으로(혹은 음으로) 만들 수 있다.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ESG 성적과 재무성과

- 실제로 Garcia_Sanz et al. (2023) 이 미국 데이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ESG 성적이 좋은 기업은 그 자산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료: Almudena Garcia Sanz, Juan Ángel Jiménez-Martín, and M. Dolores Robles, *Sustainability and Financial Risks of Firms: A Comprehensive Analysis*, EBES Conference, Madrid, April 2023.
 - 즉, ESG 성적은 위험을 낮추고 이는 다시 자본비용을 낮추어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ESG 성적과 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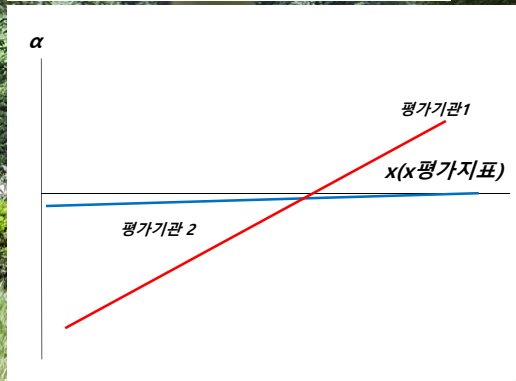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재무적 관점에서 본 ESG 평가 의의

- ESG 평가의 목적은 α 를 예측하는 것이다.**
- 따라서 평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의 2 가지 요소로 구성
 - 민감도
 - α 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α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ESG 지표를 개발
 - 정확도
 - 정확하게 (예측오차의 최소화) 예측하는 지표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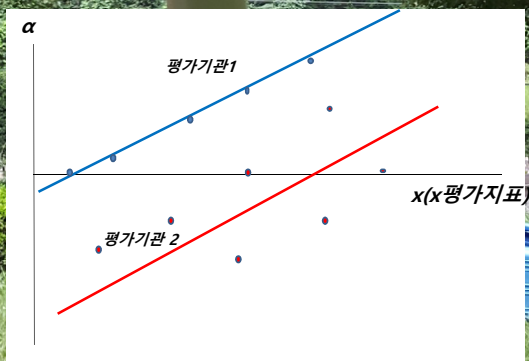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ESG의 지표의 민감도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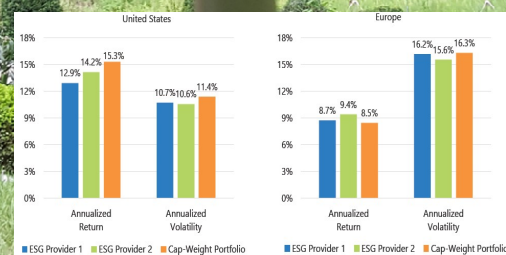
ESG 지표의 정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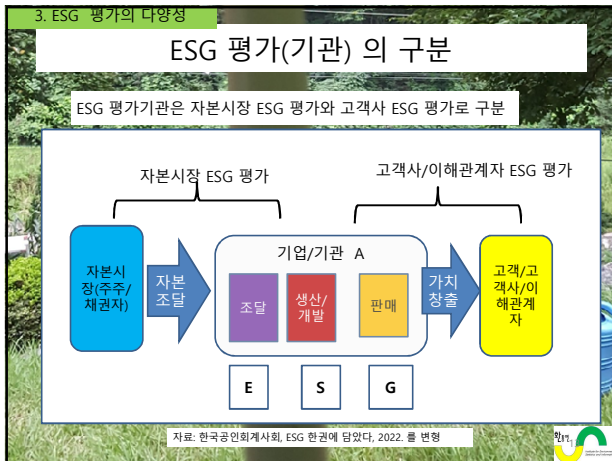


2. ESG 평가의 재무적 해석

ESG 평가기관별 재무적 성과

실제 사례: 어느 평가 결과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 ESG 평가의 다양성

자본시장 ESG 평가

- 자본시장 ESG 평가는 평가 등급이 피평가 기업의 주식/부채 발행 등 자본 조달 측면에 영향을 주는 평가이다.
 - 자본시장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ESG 평가기관이나 직접 투자/여신 대상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자본시장 ESG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최근 일부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ESG 평가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ESG 평가기관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3. ESG 평가의 다양성

자본시장 ESG 평가기관

평가명	개요	평가 대상 기업
MSCI ESG Rating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vestment) 산하 MSCI ESG Research LLC에서 수행하는 ESG 평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35개 ESG 주요 이슈 및 쟁점사항을 기반으로 기업별 ESG 위험 및 기회와 노출 수준과 관리 역량 평가	글로벌 약 14,000개 기업
서스테이널리틱스 ESG Risk Rating	미국 금융서비스 제공 기업인 모닝스타 소속 서스테이널리틱스에서 실시하는 ESG 위험 평가, ESG 위험 노출 수준과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별 위험 등급 제시	글로벌 약 13,000개 기업
ISS ESG	세계 최대의 독립적인 전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서 제시하는 ESG 평가 등급, 기업 ESG 평가 등급 및 순위, 주요 쟁점 사항, ESG 펀드 등급 등을 제시	글로벌 약 11,800개 이상 기업
블룸버그 ESG Score	글로벌 금융 데이터 제공기업 블룸버그의 ESG 평가 방대한 ESG 데이터를 기반으로 ESG 공식 이사회 구성,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 징수 등을 제시	70개국 약 9,000개 이상 기업
SAM CSA	미국 S&P 다우존스 지수와 S&P 글로벌이 인수한 ESG 평가 전문 기업 RobecoSAM에서 공동 시행하는 ESG 평가 지속가능성 중심의 기업 재무성과 측정	글로벌 약 10,000개 이상 기업
Glass Lewis ESG	세계 2위 독립적인 전문사인 Glass Lewis가 2022년부터 착수한 ESG 평가 투자자 대상 기업의 ESG 투명성 점수, ESG 목표 및 달성도 점수 기후 위험 완화 점수 등을 제공	글로벌 약 1,900개 이상 기업
KCCS ESG 평가	한국거래소 산하 ESG 정책 연구 및 평가 전문 기관인 ESG 기준위원회 매년 실시하는 ESG 평가 국내 상장사와 주요 금융회사 ESG 수준 평가 및 등급 발표	한국 국내 약 800개 상장사, 비상장 주요 금융기관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국내 민간 비영리전문법인 서스틴베스트가 자체 평가 모델인 ESG Value를 기반으로 매년 실시하는 ESG 평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 약 800개 및 투자자 요청기업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관련에 담았다, 2022.

3. ESG 평가의 다양성

고객사 ESG 평가

- 공급망의 ESG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사들이 원료조달 제조/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환경/사회 이슈 없이 경영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ESG 평가
 - 2022년 2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외기업도 유럽연합 내에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기업은 ESG 실사를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고객사 ESG 평가는 자본시장 ESG 평가와 달리 피평가 기업의 ESG 위험 및 기회에 따른 기업가치 증감영향을 **〈직접적으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3. ESG 평가의 다양성

고객사 ESG 평가기관

평가기관명	개요
RBA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전기/전자 업종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이니셔티브인 전자전기시멘트(EECC)에서 출발한 공급망 ESG 평가 및 감사 이니셔티브 RBA 회원사 및 협력사는 노동, 윤리, 건강 및 안전, 환경, 경영시스템 5개 부문 43개 규정으로 구성된 행동규범의 지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함. 평가 형태는 자기설문평가와 현장감사(Validated Assessment Program, VAP)로 구성
에코바디스 (EcoVadis)	유럽 기업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 및 플랫폼으로 평가 요소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공급망 관리 4개 영역으로 구성된 회원사가 자사의 협력사 평가를 요청하면 협력사는 에코바디스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됨
Know the Chain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및 인권/노동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 국제기업인권센터인 기업과 인권 자원센터 (Business Human Right Resource Center, BHRRC), ESG 평가기관인 Sustainalytics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공급망/구매 정책 모니터링 실제 개선활동을 평가
PSCI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글로벌 제약산업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관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가입 기업은 산업 내 공급망 ESG 위험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협력사 ESG 감사 결과 공유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 ESG 실사 소요되는 자원을 경감할 수 있음.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관련에 담았다, 2022.

3. ESG 평가의 다양성

공공기관 ESG 평가

- ESG 평가는 자본시장과 관계없이 행하여질 수도 있다.
 - 이때의 ESG 평가의 목적은 투자를 돕는 정보제공과 분석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분석이다.
 - 고객사 ESG 평가는 원청업체의 자본시장 ESG평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ESG 평가는 자본시장과 무관하다.
 - 그러므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ESG와는 그 목표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ESG는 α 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의 성격보다는 정부의 환경정책, 사회정책, 지배구조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우리가 목도하는 공공기관 ESG는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매겨지는 자본시장 중심 ESG와는 달리 **‘착한 행위’를 추구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큼.
 - 기관평가에 이미 존재하던 ESG 관련 항목들을 ESG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하고
 - 자본시장 중심 ESG의 포맷을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됨.

3. ESG 평가의 다양성

공공기관 ESG 평가

- 현단계에서 공공기관 ESG는 진정한 (genuine) ESG 가 아님.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중심 ESG 와 동일하게 공공기관 ESG평가도 α 의 예측력 확대 개념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이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ESG 평가는 자본시장 중심 ESG 평가와 달라야 할 것임도 분명함.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ESG경영과 평가도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시장 중심 ESG 경영의 목표와 다를 수는 없다.
 - 그 목표도 단지 "착한 행위"의 장려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미래 성장, 재무적 성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 ESG 경영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활동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식별해 위험 조정 수익률(α)을 개선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측면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재무 연관성 이 있는 ESG 항목으로 평가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 더욱 폭 넓은 범위의 고객, 수익자의 투자수익극대화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타당

3. ESG 평가의 다양성

ESG 평가가 다양한 이유

- ESG 평가기관의 수는 매우 많으며 평가지표도 다양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ESG 지표들이 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으며
 -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의 규제, 민간 및 시민의 활동과 인식수준 등이 수시로 변동되어가는 다이내믹한 상황에 있다.
 - 또한 평가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도 매우 다양하다. (자본시장, 고객사, 공공기관, 정부, 기타 이해관계자 등)
 - 자산운용기관별로 투자 철학과 방식이 상이하다.
 -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별로 규제환경과 자본시장의 상황이 상이하여 평가지표의 실용성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 또한 ESG 평가 데이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취사선택 가공하는 방식이 다양

3. ESG 평가의 다양성

ESG 데이터의 다양성

Provider Type	Number of Providers
Specialist In-depth, highly contextualized data covering one or two segments of ESG	16
Comprehensive Combination of objective, and subjective data covering all ESG segments	50
Fundamental Broad, objective and typically self-reported ESG data	4

자료: Li and Polychronopoulos, What a Difference an ESG Ratings Provider Makes, Research Affiliates, LLC., January 2020

3. ESG 평가의 다양성

ESG 평가 다양성의 문제점과 표준화 필요성

- 국내외에서 ESG 지표만 600여개가 존재하며 국내에 한정해서도, 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등 20여개의 평가제도가 존재.
 - 전술한 변화 같이 평가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ESG 의 본질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이를 준수하려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표준화 필요성 제기
 - 영향력 있는 평가기관의 지표에 기업들이 갖는 부담이 크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평가별로 등급 차이도 커서 신뢰도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어난다.
 - 평가별 차이에 대해 다른 MEMO 보고서에서는 모건스탠리 보고서, 레피티브(Refinitiv, 구 톰슨 로이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원 간에 평균 1.4단계부터 최대 5단계까지 격차가 나타 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 (자료: 한동숙,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재정포럼, 조세재정연구원, 2021)

4. ESG 평가의 표준화

ESG (평가) 표준화 노력

-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더불어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을 마련하여 ESG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권고 지표

구분	항목	비고
환경	온실가스 배출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에너지 사용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매립, 재활용 등 처리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사회	법규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임직원 현황	임직원의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현황, 청년인턴 활용, 육아유치 활용
	안전·보건	산업재해, 제품 안전(리콜 건수나 조치),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한 규제 준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거버넌스	공정경쟁	내부거래 하도급거래기법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위험 및 기회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방식

출처: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2021 및 한동숙,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재정포럼, 조세재정연구원, 2021

4. ESG 평가의 표준화

주요 ESG 평가와 K-ESG 지표(안) 간의 차이

구분	무디스 ESG (국가별 ESG 평가보고서)	MSCI ESG (기업별 ESG 평가보고서)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원)	레피티브 (구 톰슨 로이터)	K-ESG (산업지배구조원)
평가 항목	- 탄소 전환 - 기후 변화 - 수자원 관리 - 폐기물 및 공해 - 자연 자원	- 탄소 전환 - 탄소 배출 - 탄소 배출 - 탄소 배출 - 탄소 배출	- 환경 전략 - 환경 조직 - 환경 정책 - 환경 목표 - 환경 성과	- 지리 사용 - 배출 (emissions) - 채용혁신	- 환경경영 정책 - 환경경영 성과 - 환경 법규 준수
	- 인구 - 노동 및 소득 - 교육 - 주거 - 보건 및 안전 - 기타 사회	- 인적자원 - 제조물 책임 - 주주 - 보안 및 안전 - 사회	- 인적자원 - 제조물 책임 - 주주 - 보안 및 안전 - 사회	- 인적자원 - 제조물 책임 - 주주 - 보안 및 안전 - 사회	- 사회책임 - 인적자원 - 제조물 책임 - 주주 - 보안 및 안전 - 사회
	- 제도적 구조 -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예산 관리	- 제도적 구조 -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예산 관리	- 제도적 구조 -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예산 관리	- 제도적 구조 -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예산 관리	- 제도적 구조 -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예산 관리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한국거래소(2021), 산업동성지원부(2021, 4. 21)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동숙,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재정포럼, 조세재정연구원, 2021)

4. ESG 평가의 표준화

K-ESG의 주요 특징

- K-ESG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 10여 곳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항목으로 표준화시킨 것임.
- 특히, ESG 각각의 요소별 가이드라인 외에도 기업들에 혼란을 가중했던 정보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 이전까지는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은 평가모형을 예측하여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K-ESG 가이드라인은 점검 기준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함.
- 또한 다음과 같이 영역별 진단항목과 점검기준 외에도 추가 설명 및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이행항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음.

4. ESG 평가의 표준화

K-ESG의 포맷

본 포맷은 K-ESG 평가의 표준화된 구조를 제시하며,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① 항목 체계화: 항목을 체계화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②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④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⑤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⑥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⑦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⑧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⑨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⑩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⑪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⑫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⑬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⑭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⑮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⑯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⑰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⑱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⑲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⑳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㉑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㉒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㉓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㉔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㉕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㉖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㉗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㉘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㉙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㉚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㉛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㉜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㉝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㉞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㉟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㊱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㊲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㊳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㊴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㊵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㊶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㊷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㊸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㊹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㊺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㊻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㊼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㊽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㊾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㊿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 이연우,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정책분석과 적용포인트, Auditor Journal Vol. 266, 상정회사간사회, 2022. 2

4. ESG 평가의 표준화

K-ESG의 주요 내용

-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 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61개 사항 마련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 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4. ESG 평가의 표준화

K-ESG의 주요 내용

-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 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61개 사항 마련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 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4. ESG 평가의 표준화

K-ESG의 주요 내용

-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4. ESG 평가의 표준화

K-ESG의 주요 내용

-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4. ESG 평가의 표준화

K-ESG의 주요 내용

-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일반)
 -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활용가이드 제시
 - 또한, 국내외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의 제시를 통해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가대응 역량 확보
 - (중소·중견기업)
 -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선별 제시(27개 항목)
 - (평가검증기관)
 -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 추가 항목 제시

5. ESG 평가와 ESG 경영

ESG 경영과 ESG 평가

- ESG 경영활동이란 'ESG 경영전략'과 'ESG 정보공시'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α 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ESG와 관련한 위험의 제거 혹은 억제를 통하여 (β 의 감소를 통하여라고 표현 가능) 달성
- 성공적인 ESG 경영활동을 위해 기업은
 - 'ESG 비전 수립'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까지 ESG 경영체계를 갖추고, 각 단계별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여 이를 순조롭게 추진해야 한다.
 - ESG 경영활동은 'ESG 정보공시'가 경영활동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즉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평가과정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ESG 경영을 수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ESG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즉 ESG 점수를 잘 받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ESG 평가와 ESG 경영

K-ESG를 활용한 ESG 평가와 ESG 경영

- ESG 경영은 아직 경험이 일천하여 기업들의 대응방식이 미정립
- 평가기관별로 상이한 평가방식, 공개되지 않은 평가기준 등의 문제를 K-ESG가 해소하였으므로 K-ESG 활용이 바람직함.
- 가장 쉬운 방식 중의 하나가 K-ESG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 평가 점수 개선방안
 - ESG 경영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 이를 P-D-A 사이클에 따라 수행

5. ESG 평가와 ESG 경영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ESG 경영

- K-ESG 활용 ESG 경영
- 가중치 설정
- 자체평가 시뮬레이션 을 하여 현상태하에서의 점수를 계산하고
 - 항목별로 점수 한 단위 개선에 소요되는 화폐적 비용을 추정하고
 - 비용대비 점수개선 비율이 큰 항목에 대하여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효과적으로 최적화하는 전략의 구사가 바람직함.

5. ESG 평가와 ESG 경영

K-ESG의 기본적인 구조

- 1) 항목설명
 - 진단의 목적·내용·방법을 함축적으로 제시
- 2) 성과점검
 - 항목진단에 필요한 데이터의 소스, 산출 기간, 범위, 산식 등
- 3) 점검기준
 - 평가 산출방법 등

5. ESG 평가와 ESG 경영

K-ESG 활용 ESG 경영

- K-ESG 활용 ESG 경영: 비용극소화 예산배정
 - 가중치 결정 (처음에는 동일가중치 사용)
 - 점수개선 목표 설정 (P, E, S, G부문 합계 100점 개선)
 - 점수 단위당 비용 추정
 - ESG 예산책정(budgeting): 목표 점수개선 위한 최소 비용을 가져오는 예산배정을 선택

ESG 요소별 평가(점검) 기준 예시

- P-1-1 정보공개사항**
- ① 1단계 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ESG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② 2단계 조치가 불확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접물 등에 ESG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③ 3단계 조치가 불확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접물 등에 ESG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 ④ 4단계 ESG 정보를 포함한 조치가 불확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접물 등에 가장한 정보에 포함하지, 특정 내역에 담지 않은 경우
- ⑤ 5단계 ESG 정보를 포함한 조치가 불확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접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원	25원	50원	75원	100원

E-8-1 환경법/규제위원

- ① 유형 1: 지난 5년간 한 행정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례가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형선형, 징역, 금고, 과징금 중,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 ② 유형 2: 지난 5년간 한 행정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례가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형징상 처분 중 금고내역을 포함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문인 경우
- ③ 유형 3: 지난 5년간 한 행정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례가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형징상 처분 중 배고징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형선형, 징역과 그 외 기타 죄의 경우

유형 1	유형 2	유형 3
------	------	------

* 환급 법/규칙 위반행위는 소액환급 불발행위와 가중징계, 환급보조자제 요청행위 등의 가중징계, 과징금, 영종·야생생물등/국회 동물보호법, 폐기물 불법처리와 가중징계, 누범법 등, 명예 불여행위등에 대한 제명과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 사항 일지 혹은 조치하지 않은 경우나 「대기환경보전법, 생활폐기물법」을 위반 처리하는 행위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4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 자료: 『K-ESG 가이드라인 v1.0』 부분 발췌 후 재작성(이연우,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쟁점분석과 적용포인트 Auditor Journal Vol. 266, 삼정회사감사회, 2022. 2)

S-9-1 사회법/규제위반

- (1) 운영 및 지원 5개년 간 사회관계망/국제 위기관리측 차원이 확정된 전수조사에 대해, 처벌승인과 행정상 형벌, 벌금, 과료한 경우, 또는 국가나 자국민의 안전을 당사자로서 혹은 제3자에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
- (2) 운영 및 지원 5개년 간 사회관계망/국제 위기관리측 차원이 확정된 전수조사에 대해, 처벌승인과 행정상 처분 중 공권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준수 사항
- (3) 운영 및 지원 5개년 간 사회 관계망/국제 위기관리측 차원이 확정된 전수조사에 대해, 처벌승인과 행정상 처분 중 비공권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사실정정, 경고 등의 행위
- 자료 : 정보 보호위원회(www.kisa.go.kr)

유형 1	유형 2	유형 3
30%	30%	30%

*사해법/국회 폐원론 "근로자법업", "고용상 연장자법규치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종업자에 처벌에 관한 법안", "소해보호법", "전직자상가법에서 소해보호에 관한 법안", "학교공제회 공영화에 관한 법안", "가정폭력처리의 공영화에 관한 법안", "가정고양동물양육에서 자제 공영화에 관한 법안" 등 있다.

G-4-1차별구조:윤리경영

- [illegible]

1개 이하 종속	2개 종속	3개 종속	4개 종속	5개 종속
----------	-------	-------	-------	-------

은근저울 뒤집으면 조각이 제정돈 은리금에서 다루는 생활양식을 위한 단편 형식을 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회양식의 은리금론을 위한 단편을 형성한다. 이러한 은리금론 11의 유형이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 상충 행위”, “금품 및 횡령 수습”, “적부전환 및 지급불능”, “금거래 및 미지급”, “불법중매”, “자금거래 및 저지환”, “음용수로 은리 위반”, “내부보통 및 단행 불능”, “음식거리 제재”, “과출 및 자제”, “가짜, 변조금품/가사지환 행위”

5. ESG 평가와 ESG 경영

K-ESG 활용 ESG 경영

- 비용극소화 ESG 예산할당
 - 위의 4개 영역 사례에서 해당 조직의 점수가 다음과 같다 가정하자. 목표는 70점 개선이다.
 - 계산결과와 70점 개선을 달성하는 비용최소화 예산배정은 P-1에 10억원, S-9-1에 10억원 합 20억

1-1-1 재무보통시 시	312년 50원	조달의 용역이 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시 사업보고서 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경우	점수 없음 개선비율 2000원	2000~50~10억원 50원 개선
1-4-1 사회책임규위 원	유형2 70원	지속 5년제 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변해 등 판공의 확장된 간수에 대한 정보공개 및 경영자 시론 중 공익적 지분에 해당하는 과다회, 과다금, 이명장제 등 간공 연	점수 없음 개선비율 1억원	개선하지 않음
1-4-2 사회책임규위 원	유형2 70원	지속 5년제 간 사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변해 등 판공의 확장된 간수에 대한 정보공개 및 경영자 시론 중 공익적 지분에 해당하는 과다회, 과다금, 이명장제 등 간공 연	점수 없음 개선비율 5000만원	5000~20~10억원 20원 개선
G-4-1 윤리 경영	유형3 100원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합계	290원			20억원 미용 10원 개선

5. ESG 평가와 ESG 경영

K-ESG 가이드라인

영역	분주	분류번호	인간공학
정보공시(P) 5개 영역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 이슈 및 KPI
		P-3-1	ESG 정보공시 검증
	정보공시 검증	E-1-1	인증평가 목표/기준
환경경영(E) 7개 영역	환경경영목표	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E-2-1	임무지각 사항량
	분부지각	E-2-2	재정 분부지각 비율
		E-3-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 Scope 2)
	온실가스	E-3-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E-4-1	에너지 사용량
		E-4-2	재정 에너지 사용 비율
	물수	E-5-1	물수 사용량
		E-5-2	재사용 물수 비율
환경영향/국제 위반	폐기물	E-6-1	폐기물 배출량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법/국제 위반	E-8-1	환경법/국제 위반
	환경 라벨링	E-9-1	환경표 인증 취득 및 서비스 비율

5. ESG 평가와 ESG 경영

환경부문(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 **핵심사항**
 - 조직이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조직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환경성을 향상시키는 조직 내부 구조적인 개혁이 마련되어 있는 지 점검
 - 조직이 수립한 환경 분야 단기/중장기 목표 구체성과 내재화 수준을 확인
 - 조직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원적 단기/중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이행장면을 위한 지표를 정의하고 있는지 측정
 - **고려사항**
 - 조직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통해 조직의 사업영역 및 외부환경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환경 분야 목표와 관련된 핵심이슈들은 아래와 같은 이슈가 해당된다.
 -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재원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이슈 해결
 - 폐기물 발생량 절감 생분해 플라스틱 도입 재활용 용기 확대 폐수처리 효율적 투입
 - 성취 및 토양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친환경 공급망 구축 대기/수질/토양 오염 관리
 - 유해물질 감소 재래 물리 라벨링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 **목표란**
 - 목표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며, 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업무활동의 직접적인 선행조건이다. 조직은 내부 성과관리와 대외신뢰성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 **목표의 요건**
 - 1) 조직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2)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여건상 현실적이고 달성가능해야 한다.
 - 3) 목표 대비 이행현황이 측정가능한 계량적 형태이어야 한다.
 -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5) 목표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illegible]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 핵심사항**
 - 조직이 환경성과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관리,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영역 요구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를 측정
- 환경경영**
 - 환경경영이란 조직의 사업운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이다.
- 환경경영 체계**
 -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방침 개발, 이행, 달성, 검토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조직, 책임, 자원, 절차, 규정 및 성과관리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한 것을 의미한다.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영역	환경경영 추진체계	환경	환경경영 목표
영역 설명	- 조직이 환경성과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관리,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영역 요구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성과 지표	조직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를 측정 [데이터에 포함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에 포함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데이터에 포함된]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평가 기준	1.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거버넌스, 정책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 [전사 거버넌스,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포함] 2.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전사 전담조직, 전사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포함] 3. 환경경영 정책, 자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환경경영 정책, 자원,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포함] 4. 환경경영 추진 현황을 점검/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환경경영 추진 현황, 점검/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포함] 5. 환경경영 국제 이행현황이 경영진 보고 관련 구성원에 공유 평가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환경경영 국제 이행현황, 경영진 보고 관련 구성원,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포함]		
평가 기준: 적용방안(선택사항)	1. 적용	2. 적용	3. 적용
평가 기준: 적용방안(선택사항)	4. 적용	5. 적용	6. 적용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2-1: 원부자재 사용량)

- 핵심사항**
 - 조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원부자재 사용량을 점검
 -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산업 평균 미만인지 측정
- 고려사항**
 - 해당 항목
 -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포함
 - 원부자재의 분류
 - 재생가능 여부에 따라 재생가능한 원부자재, 재사용가능한 원부자재로 분류되며, 해당원부자재의 원천(Source)에 따라 재생/재활용 원부자재, 천연 원부자재로 분류
 - 평가방식
 - 산업평균과 비교를 통한 성과 평가 방식 외에, 조직의 과거년도 사용량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원부자재 절감 목표 대비,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2-1: 원부자재 사용량)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영역	원부자재 사용량	환경	원부자재
영역 설명	- 조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원부자재 사용량을 점검 -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산업 평균 미만인지 측정		
성과 지표	조직이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데이터에 포함된] '조직별, 품목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데이터에 포함된]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데이터에 포함된]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평가 기준	1.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2.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3.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4.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5.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원부자재 사용량]		
평가 기준: 적용방안(선택사항)	1. 적용	2. 적용	3. 적용
평가 기준: 적용방안(선택사항)	4. 적용	5. 적용	6. 적용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2-2: 재생원부자재 사용비율)

- 핵심사항**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천연자원 고갈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투입 방식을 자원순환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중 재생 원부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제 재생 원부자재로 대체하는 등의 자원순환 이행성과를 확인
 -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하는지 측정
- 고려사항**
 - '재생 원부자재'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재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2-2: 재생원부자재 사용비율)

- 평가방식**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5개년 간 재생 원부자재 사용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 GRI의 기준**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재생 원부자재 사용량 정보요래와 같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공시 요구사항: 조직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사용한 재생 원부자재의 비율 보고
 - 측정 산식

$$\text{사용한 재생 원부자재 비율} = \frac{\text{사용한 총 재생 투입 원부자재}}{\text{사용한 총 투입 원부자재}} \times 100$$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2-2: 재생원부자재 사용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영역	환경	환경	원부자재																															
영역 설명	· 자원의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천연자원의 고갈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원부자재 조달·취급 방식을 친환경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부수하는 폐물 중 재사용 원부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제 재사용 원부자재로 대체하는 등의 자립순환 인형상을 확인																																	
성과 관련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를, 지난 3개년 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하는지 측정 [데이터에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에 원천] 국내외 산업 및 기타 언론정보 [데이터에 원천] 국내외 산업 및 기타 언론정보																																	
평가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31년</th> <th>32년</th> <th>33년</th> </tr> </thead> <tbody> <tr> <td>31년</td> <td>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td> <td></td> <td></td> </tr> <tr> <td>32년</td> <td>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td> <td></td> <td></td> </tr> <tr> <td>33년</td> <td>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32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3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31년</th> <th>32년</th> <th>33년</th> </tr> </thead> <tbody> <tr> <td>31년</td> <td>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증가 추세</td> <td></td> <td></td> </tr> <tr> <td>32년</td> <td>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감소 추세</td> <td></td> <td></td> </tr> <tr> <td>33년</td> <td>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증가 추세</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증가 추세			32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감소 추세			33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증가 추세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32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3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증가 추세																																	
32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감소 추세																																	
33년	직전 3개년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 비율 증가 추세																																	

· 재사용 원부자재 사용이 없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10개 산업에서 재사용 원부자재를 100% 사용하는 경우 100점 적용
 원천 기준: 직용방안(단계별)
 * 국내에서 산업에 적용된 경우, 100% 적용된 경우 100점 적용
 * 국내에서 적용된 경우 100% 적용된 경우 100점 적용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1: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 핵심사항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1 & Scope2)을 감축하고 있는지 점검
 -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
 -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이 감축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측정
 - CGAR 등 사용
- 고려사항
 - Scope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폐기물처리]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구매전기, 구매 열(온수, 스팀 등)]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1: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 고려사항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장구를 통해 산업평균 또는 경쟁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 조직별 홈페이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 시스템*의 원형배출량통계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이외에 다음이 가능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할당량 대비,
 -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값 대비,
 -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SBT*) 대비,
 -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1: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영역	환경	환경	온실가스																															
영역 설명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1 & Scope2)을 감축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 규모 파악(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사업 연도(구조조정, 인수합병 등)를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용이한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																																	
성과 관련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이 감축 추세에 있는지를, 지난 1개년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평균을 초과하는지 측정 [데이터에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 시스템* 또는 원형배출량통계 [데이터에 원천] 국내외 산업 및 기타 언론정보 [데이터에 원천] 국내외 산업 및 기타 언론정보																																	
평가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31년</th> <th>32년</th> <th>33년</th> </tr> </thead> <tbody> <tr> <td>31년</td> <td>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td> <td></td> <td></td> </tr> <tr> <td>32년</td> <td>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td> <td></td> <td></td> </tr> <tr> <td>33년</td> <td>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32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3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31년</th> <th>32년</th> <th>33년</th> </tr> </thead> <tbody> <tr> <td>31년</td> <td>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td> <td></td> <td></td> </tr> <tr> <td>32년</td> <td>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td> <td></td> <td></td> </tr> <tr> <td>33년</td> <td>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32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			33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32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3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연도	31년	32년	33년																															
31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32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																																	
33년	직전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10개 산업에서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사용하는 경우 100점 적용
 원천 기준: 직용방안(단계별)
 * 국내에서 산업에 적용된 경우, 100% 적용된 경우 100점 적용
 * 국내에서 적용된 경우 100% 적용된 경우 100점 적용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핵심사항
 - 조직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의 감축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Scope3는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직이 Scope3를 직접 감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Scope3의 인식/산정/감축 등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 수준을 확인**
 - 조직이 지난 1개년 간 Scope3 온실가스 배출 범주를 인식,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지 측정
- Scope3 온실가스란
 -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장(경계) 외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다. 감축의 주 대상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이슈가 가속화됨에 따라 Scope3 관리 필요성도 증가.
 - 특히, 사업 운영의 대부분을 외주화(Outsourcing)한 조직은 Scope3 관리가 중요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Scope3 온실가스 범주
 -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업스트림
 - 1. 원부자재 및 서비스 구매; 2. 자본재 투자 및 구매
 - 3. 1, 2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 4. 원부자재 운송; 5. 사업장 발생 폐기물
 - 6. 구성원 출장; 7. 구성원 통근;
 - 8. 임대 자산
 -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다운스트림
 - 9. 운송과 유통; 10. 판매제품 가공
 - 11. 판매제품 사용; 12. 판매제품 폐기처리
 - 13. 임대 자산; 14. 가맹점 영업권;
 - 15. 투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 고려사항
 -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법/규제에 따라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Scope3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 산업평균과 비교를 통해 Scope3 배출량 및 감축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이 자율적으로 Scope3를 관리하는 경우
 - 과거년도 배출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Carbon Trust와 같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외부 인증을 받은 경우
 - Scope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온실가스	환경	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항목 설명	* 조직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Scope1, Scope2 배출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Scope3은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속하기 때문에, 조직이 Scope3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가(특히)를 확인하기보다는 Scope3의 인식/산출/감축 등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 수준을 확인		
성과 평가	조직이 지난 1개년간 Scope3 온실가스 배출 범주를 인식,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지 확인 [데이터의 원천] Scope3 추정 범위, Scope3 배출 데이터, Scope3 검증이면서 [데이터의 기간] 최근 회계연도 [데이터의 범위] NA		
평가 기준	Scope3 범위 인식 (1/3)	Scope3 배출량 산정 (1/3)	Scope3 배출량 검증 (1/3)
	1단계	조직의 Scope3 범주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	Scope3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은 하지 않은 경우
	2단계	조직의 Scope3 범주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제3자 검증은 하지 않은 경우
	3단계	조직의 Scope3 범주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제3자 검증은 하지 않은 경우
원천 기준 적용방안(단계별) 1. "Scope3 범위 인식", "배출량 산정"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1/3(하위)에 해당 결과 산정 2. "배출량 산정"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2/3(중위)에 해당 결과 산정 3. "배출량 산정"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3/3(상위)에 해당 결과 산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3: 온실가스 검증)

- 핵심사항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타 온실가스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
- 평가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검증기관의 적격성',
 -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 '검증수준의 명확성',
 - '검증지표의 구체성' 요건이 충족 여부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3: 온실가스 검증)

- 고려사항: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 2021년 7월 2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은 총 350개에 관리기관별로 국토교통부 93개, 산업통상자원부 201개, 농림축산식품부 26개, 해양수산부 8개, 환경부 22개이며, 관리업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현재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CO ₂ 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3-3: 온실가스 검증)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온실가스	환경	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항목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타 온실가스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		
성과 평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 명확성', '검증지표의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 [데이터의 원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이면서 [데이터의 기간] 최근 회계연도 [데이터의 범위] NA		
평가 기준	1단계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단계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단계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4단계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범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산업부령, 에너지법 등)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범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산업부령, 에너지법 등)
	5단계	조직의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제3자 검증기관 의견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선, 향후 관리의 변화가능성 등)	조직의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제3자 검증기관 의견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선, 향후 관리의 변화가능성 등)
원천 기준 적용방안(단계별) 1.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1/5(하위)에 해당 결과 산정 2.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2/5(중위)에 해당 결과 산정 3.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3/5(상위)에 해당 결과 산정 4.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4/5(상위)에 해당 결과 산정 5. "검증기관에서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결과 5/5(상위)에 해당 결과 산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4-1: 에너지)

- 핵심사항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절감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한 단위 당 개념의 원단위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 측정방식
 -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4-1: 에너지)

- 관련 개념

- 에너지 사용량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화석연료'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연료'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등 + '조직에서 생산한 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한 전기, 열' 등
- (가스, 기름, 액체 연료)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연료 사용량 × 총발열량
- (전기)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전력사용량 × 발열량(소비)

- 측정방식으로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외에 다음이 가능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할당량 대비 비교,
- 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 대비 비교,
-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비교,
- 4) RE100 등 글로벌 합의에 따른 목표 대비 비교,
-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4-1: 에너지)

[illegible]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4-2: 재생에너지사용비율)

- 핵심사항

- 조직이 에너지 체계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항목을 점검
- 재생에너지의 범위 (조직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생산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 RPS (대규모 발전사 의무율 25%) 대상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 '녹색프리미엄요청금 사용',
 - '재생에너지 크레딧 구매',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자본 참여, '
 - 제3자 전력구매계약' 등

- 평가기준

-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하는지, 지난 5개년 간 재생에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4-2: 재생에너지사용비율)

[illegible]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5-1: 용수사용량)

- 핵심사항

- 조직이 용수를 공급받는 취수원을 보호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자원 고갈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조직이 사용하는 용수(매출용, 생산용, 내부 재사용용)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내부 재사용량)로 규모 차이(중소기업,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인율**을 기반으로 유사 사용량을 점검

- 평가기준

-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점차 추세에 있는지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5-1: 용수사용량)

- '용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취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업용수 외 표층수, 지하수, 토양수, 강우포집, 해양취수
- 조직의 용수 사용량 평가방식은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외에 다음 방식 사용가능
 - 1) 조직이 취수받는 수월별 공급능력 대비,
 - 2) 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 수자원 부존량 대비, 3) 조직의 과거년도 사용량 기
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용수 절감 목표 대비,
 -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의 용수 사용과 비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5-1: 용수사용량)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1	환경	용수	
항목	용수 사용량			
항목 설명	• 조직이 용수를 공급받는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자원 고갈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조직이 사용하는 용수 총량(단위: 취수량, 내부 재사용량)을 주출처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용수 사용량을 관리			
성과 평가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평균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관련] '조직별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 > 자원환경정보시스템-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료설계 [데이터 산식] 원단위 용수 사용량 = 총 용수 사용량 / 원단위 활동 분도			
평가 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수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감소 추세	
*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평가 기준 적용방안(단계별)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중, 가장 불리하게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수세 점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5-2: 재생용수사용비율)

핵심사항

- 조직이 도시화와 산업화 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용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수(汚水), 하수, 폐수를 효과적 으로 순환·재사용하는지 점검

평가방식

-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재사용 용수 비율이 산업평균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재사용 용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5-2: 재생용수사용비율)

물의 순환 개념

- '우수'→하천→취수→1차/2차수→배출→하천→해양으로,

용수 재사용

- 물의 순환개념에 인공적인 순환을 개념을 추가한 '우수'→하천→취수→1차/2차수→배출→하천→해양.

재사용

- 재사용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후 이를 다시 취수하는 간접 재사용(Indirect Reuse)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 재사용처리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조직의 사업 및 영업 행위에 다시 사용하는 직접 재 사용(Direct Reuse)을 의미.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5-2: 재생용수사용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2	환경	용수
항목	재생용수 사용 비율		
항목 설명	• 조직이 도시화와 산업화 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용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중수도,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수(汚水), 하수, 폐수를 효과적으로 순환·재사용하는지 점검		
성과 평가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산업평균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관련] '조직별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료설계 [데이터 산식] 재생용수 사용 비율 = 총 재생용수 사용량 / 총 용수 사용량		
평가 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2단계	직전 1개년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수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재생용수 사용 비율이 감소 추세
* 용수 재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중, 가장 불리하게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수세 점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6-1: 폐기물배출량)

핵심사항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사업 및 영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
-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점검

평가기준

-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폐기물 배 출량이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폐기물이란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폐기물의 종류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6-1: 폐기물배출량)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1	환경	폐기물	
항목	폐기물 배출량			
항목 설명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사업 및 영업 활동 (ex. 연구개발, 제품 생산/가공/포장 등 포장, 소비자가 사용 이후 폐기된 제품)은 제외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간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			
성과 평가	조직의 직전 1개년의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평균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관련] '조직별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 > 자원환경정보시스템-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료설계 [데이터 산식]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 = 총 폐기물 배출량 / 원단위 활동 분도			
평가 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수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	
*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평가 기준 적용방안(단계별)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중, 가장 불리하게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수세 점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6-1: 폐기물재활용비율)

- 핵심사항
 - 조직이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는 것을 넘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가공-생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거나, 조직 내/외부에서 2차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 평가기준
 - 조직의 직전 1개년의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산업평균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6-1: 폐기물재활용비율)

- 폐기물 재사용이란
 -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의 원래 용도 및 사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 폐기물 재활용이란
 - 폐기된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폐기물 재활용의 3가지 방식
 - 물질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처리하여 유기극속, 플라스틱, 종이류, 목재 등 특정 2차 물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식
 - 화학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분자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방식
 - 에너지 전환
 - 폐기물이나 부산물로부터 고형연료, 메탄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를 회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6-1: 폐기물재활용비율)

- 폐기물 재활용의 법률상 제한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를 재활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산업평균 대비 방식 외 인정되는 평가방식
 -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조직은 폐기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산업별, 조직규모별 재활용 및 재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대용치(Proxy)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이 직접 산업평가를 조사하는 방식 외에 다음 방식이 가능하다.
 - 1) 국내 총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비,
 - 2) 조직의 과거년도 재활용 비율 기반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 3) 조직이자체적으로 수립한 폐기물 재활용 목표 대비,
 - 4)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6-1: 폐기물재활용비율)

구분	분류 방법	평가	단위
	단·수	환경	폐기물
항목	폐기물 재활용 비율		
항목 설명	* 조직이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는 것을 넘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가공-생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거나, 조직 내/외부에서 2차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산과 관련	(조직의 직전 1개년도의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산업평균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평가에 관한] 「조직별 중재자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경영관리」 연도별 전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입계현황, 제품원자재사용자 재활용 실적, 포장재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명 실적 [평가에 관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 재활용(재사용 포함) 대상 폐기물 발생량		
평가 기준	현재 수준 (1/2) 추세 (1/2)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직전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감소 추세 직전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변동 없음 직전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증가 추세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4점 차점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구분한 폐기물 재활용 및 재사용하고 있는 경우 100% 점수
평가 기준	(참고: 재활용(재사용 포함) 실적) * 국제 연합의 산업 평균, 선진국, 개도국에 대한 평가의 한계로 인해 * 연도별로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 1/2, 2/2, 3/2, 4/2, 5/2, 6/2, 7/2, 8/2, 9/2, 10/2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1: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핵심사항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64조 대기오염물질 중 대다수를 구성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
- 평가방식
 - 조직의 직전 1개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2.5) 평균 배출농도가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1: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측정방법론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한다.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1: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측정방법론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한다.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1: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경우, 동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운영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성과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이외의 평가방식
 -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비,
 - 2)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농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대비,
 - 4) 조직의 경쟁조직과의 비교하는 방식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1: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지자체 기준 대비평가
 - 또한,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별도로 정한 '법적허용기준'을 참고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 경우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1: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구분	E-7-1	환경	오염물질														
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평가 설명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그 64조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수준을 준수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 기준법,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																
성과 관련	조직의 직전 1개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 ₁₀) 평균 배출농도가 산업평균 미만인지, 직전 5개년 간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에 관한] "조직별 홈페이지" 또는 자측가능 측정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또는 실시간 자료조회 [데이터에 관한]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명실제 [데이터에 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 배출농도(PPM, mg/m ³)																
평가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 수준 (1/2)</th> <th>1단계</th> <th>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2단계</td> <td>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 수준 (1/2)</th> <th>1단계</th> <th>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th> </tr> </thead> <tbody> <tr> <td>2단계</td> <td>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td> </tr> </tbody> </table> *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1'인 경우 100점 적용 * 평가 기준: 직전 1개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산업 평균 * 평가 기준: 직전 5개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산업 평균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	2단계	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	3단계	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															
2단계	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																
3단계	직전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2: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핵심사항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최종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물질을 대표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
- 평가기준
 - 조직의 직전 1개년 간 최종 배출한 폐수 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의 평균 배출농도가 **산업평균** 미만인지, 직전 **5개년 간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7-2: 수질오염물질배출량)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구분	E-7-2	환경	오염물질														
목적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평가 설명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최종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물질을 대표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																
성과 관련	조직의 직전 1개년 간 최종 배출한 폐수 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의 평균 배출농도가 산업평균 미만인지, 직전 5개년 간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에 관한] "조직별 홈페이지" 또는 자측가능 측정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또는 수질정보망 [데이터에 관한]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명실제 [데이터에 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PPM, mg/L)																
평가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 수준 (1/2)</th> <th>1단계</th> <th>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2단계</td> <td>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 수준 (1/2)</th> <th>1단계</th> <th>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th> </tr> </thead> <tbody> <tr> <td>2단계</td> <td>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td> </tr> </tbody> </table> *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0점 적용 *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가 '1'인 경우 100점 적용 * 평가 기준: 직전 1개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산업 평균 * 평가 기준: 직전 5개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평균 배출농도 / 당해년도 산업 평균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	2단계	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	3단계	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연세 수준 (1/2)	1단계	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															
2단계	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변동 없음																
3단계	직전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8-1: 환경법/규제 위반)

- 핵심사항
 -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 관리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 환경 관련 법/규제 위반 사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평판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법/규제 위반'을 점정
- 평가방식
 -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측정
 - 자료원천
 -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 '조직별 홈페이지' 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8-1: 환경법/규제 위반)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관련 법규
 - 각 개별 환경 분야 법/규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제14조
- 환경법/규제 위반 정보 공유 의무
 - 확정판결된 환경 법/규제 건수 외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환경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평판적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총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함.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8-1: 환경법/규제 위반)

구분	분류번호	영역	기준
영역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환경 법/규제 위반
영역 설명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 관리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환경 관련 법/규제 위반 사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평판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법/규제 위반'을 점정		
평가 방법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측정 [데이터에 포함됨]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에 포함됨] 국외에 사업장 및 기타 연쇄설계 [데이터에 포함됨] 5개년 환경 법/규제 위반 건 수 *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영역 기준	유형 1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건수에 중 한건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징금, 경고,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당할 경우	
	유형 2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건수에 중 한건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 3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건수에 중 한건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경고, 훈고 등인 경우	
	유형 4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건수에 중 한건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경고, 훈고 등인 경우	
* 당해 사업장 및 부문, 분, 월별에 평균치는 100원으로 산정, 최저평균은 100원으로 제한			
환경 기준: 적용방안(단행형)			
		유형 1	유형 2
		-50점	-50점
		-50점	-50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9-1: 친환경인증제품 및 서비스 비율)

- 핵심사항
 - 제품의 조달-생산-사용 등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인체-생태계 독성 등 제품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파악하며, 제품의 긍정적 환경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은 축소하고 있는지 확인
 - ISO 등 국제인증표준에 준하거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정
- 평가방식
 - 조직의 지난 1개년 간 판매한 전체 제품 및 서비스 중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업평균과 상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9-1: 친환경인증제품 및 서비스 비율)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의 내용
 - 1)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친환경성을 확인, 2)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계량적 정보를 라벨링하는 것에 대해
 - 공신력있는 제3자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거나
 - 국내외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조직이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 조직은 해당 산업 내 통용되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표준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
 - 해외 주요 인증 : ISO14021, ISO14024, ISO14025, CE Marking
 - 국내 주요 인증 :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GR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9-1: 친환경인증제품 및 서비스 비율)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의 내용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인증표준 및 제도가 다양함과 동시에, 조직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대외 선언하는 방식이 시장에 통용됨에 따라
 - 산업별, 조직규모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대용치(Proxy)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조직이 직접 산업평균을 조사하는 방식 외다음을 채택 가능
 - 1) 조직의 과거년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 비율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비교
 - 2) 조직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방향에 관해 자체 수립한 목표 대비 비교
 -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

6. 영역별 가이드(E)

환경부문(E-9-1: 친환경인증제품 및 서비스 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위		
	E-9-1	환경	환경 리얼링		
목적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목적 설명	- 제품의 조달-생산-사용 등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인체-생태계 독성 등 제품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제품이 긍정적 환경영향을 최대적이고 부정적 환경영향은 최소화하고 있는지 확인 - ISO 등 국제인증기준에 준하거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				
성과 평가	조직의 지난 1개년 간 판매한 전체 제품 및 서비스 중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업평균과 상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온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경실체 [데이터 상세]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 조직의 총 매출액)				
평가 기준	1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산업평균 대비 20% 높은 수준'인 경우			
	2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산업평균 대비 10% 높은 수준'인 경우			
	3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산업평균 수준'인 경우			
	4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산업평균 대비 10% 낮은 수준'인 경우			
	5단계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이 '산업평균 대비 20% 낮은 수준'인 경우			
평가 기준 적용방안(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